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6. 6. 14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6. 6. 1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96. 6.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가. 제안이유

○ 농지임대차관리법의 폐지와 농지법(94. 12. 22 법률 제4817호)·동법시행령(95. 12. 22 대

통령령 제14835호) 및 동법시행규칙(95. 12. 29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의 제정으로 관련  
조문 개정

나. 주요골자

-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제2항에는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인근 2 내지 4개동을 기준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고 하여 위원회 운영방법을 개선
- 안 제4조의 위원회의 기능을 농지법에 맞도록 개정
- 안 제6조의 위원의 추천 및 위촉, 안 제8조의 위원의 업무수행, 안 제11조의 임차료의 상한 등에 관한 조항을 관련법규 및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체계적인 심사내용

○ 없음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7호
의 결	96. 6. 28
년 월 일	(제46회)

제출년월일: 1996. 6. 14

제 출 자: 부 천 시 장

제안이유

농지임대차관리법의 폐지와 농지법(94. 12. 22 법률 제4817호)·동법시행령(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및 동법시행규칙(95. 12. 29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의 제정으로 관련조문 개정

주요골자

-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관련법 규정의 개정(안 제1조)
-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제1항)
-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인근 2 내지 4개동을 기준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는 위원회 운영방법 개선(안 제3조의2 제2항)
- 위원회의 기능을 농지법에 맞도록 개정(안 제4조 각호)
  -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의 조사 등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

-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약에 관한 협의
-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 기타 농지와 농지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의 처리
- 위원의 추천 및 위촉은 주민총회 등을 거쳐 법 제47조제2항제2호 및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농민 중 농업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위촉(안 제6조)
- 위원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 적합여부를 확인(안 제8조)
-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차료 상한(안 제11조)

부천시조례 제 호

###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입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입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농지임대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소위원회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인근 2내지 4개동을 기준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4.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5.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6.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7.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8. 기타 농지와 농지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의 처리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각 동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동장이 포함된 동을 대표하는 단체의 회의(이하 "주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법 제47조제2항제2호 및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농민 중 농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추천한다.

단, 동장이 추천한 자 중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자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자를 다시 추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총회를 거쳐 동장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추천한 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단, 결격자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의 업무수행) 위원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제11조중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를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7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본 조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별지”

[별지 제1호서식]

농지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추천서

임 차 인 대 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자 경 과 임 대 를 검 한 대 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자 경 농 대 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위 사람은 농지법 제47조제2항제2호·동법시행령 제65조 및 부천시농지  
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구○○동을 대표하는 농지관리위원회위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구○○○동장 (인)

임 차 인 대 표

첨부서류 : 후보자 임대와 자경을 겸한 대표 인적사항 및 영농 현황 1부

자 경 농 대 표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

임 차 인 대 표

후보자 임대와 자경을 겸한 대표 인적사항 및 영농 현황

자 경 농 대 표

인 적 사 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				
	④ 주소지거주기간	19 . . .	~	19 . . .	(	년 월)
	⑤ 영 농 기 간	19 . . .	~	19 . . .	(	년)
	⑥ 최 종 학 력	학교(졸업,중퇴)				
	⑦ 주 요 경 력					
	영 농 현 황	⑧ 소유농지				
(단위 : m <sup>2</sup> )						
전		답	과 수 원	시 설 원 예	계	
⑨ 임차(임대)농지						
(단위 : m <sup>2</sup> )						
전		답	과 수 원	시 설 원 예	계	
⑩ 주재배작물						
(단위 : m <sup>2</sup> )						
작 목 명	재 배 면 적		비 고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농지임대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u></p>
<p>(신설)</p>	<p>제3조의2(소위원회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u>법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p> <p>②위원장은 <u>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인근 2내지 4개동을 기준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u></p>
<p>제4조(위원회의 기능) <u>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제4조(위원회의 기능) <u>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u></li> <li>2. <u>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임차료의 감면 기타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의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조정</u></li> <li>3. <u>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실태 조사 및 건의</u></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u></li> <li>2. <u>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u></li> <li>3. <u>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의 상한에 관한 심의</u></li> </ol>



현행	재정안
<p>4.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역 안의 <u>농지거래 상황의 확인</u></p>	<p>4.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p>
<p>5.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로 보지 아니하는 대상농지(위토, 종교단체의 소유농지)여부의 확인</p>	<p>5.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p>
<p>6.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 재배 및 식재여부의 확인</p>	<p>6.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이에 관한 협의</p>
<p>7.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항(농지의 매매 및 구입자금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 농지임대차사업과 관련된 업무 및 공사의 농가 경영규모 적정화 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p>	<p>7.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p>
<p>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p>	<p>8. 기타 농지와 농지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의 처리</p>
<p>9. 기타 농지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p>	
<p>제6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각 동장은 시장으로부터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p>	<p>제6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각 동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 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동장이 포함된 동을 대표</p>

현행	개정안
<p><u>민총회 또는 동 개발위원회(동 개발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개발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합의체)를 소집하여 영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민 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u></p>	<p><u>하는 단체의 회의(이하 "주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법 제47조제2항제2호 및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농민 중 농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한다.</u></p> <p><u>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u></p> <p><u>②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추천한다.</u></p> <p><u>단, 동장이 추천한 자 중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자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자를 다시 추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u></p> <p><u>③시장은 주민총회를 거쳐 동장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추천한 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u></p> <p><u>단, 결격자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u></p>
<p><u>제8조(위원의 업무수행 결과보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 등을 인정하거나,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의 확인을 한다.</u></p>	<p><u>제8조(위원의 업무수행) 위원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 적합여부를 확인한다.</u></p>
<p><u>제11조(임차료의 상한)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은 별표 2와 같다.</u></p>	<p><u>제11조(임차료의 상한)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7조.....</u></p> <p>.....</p>

신·구조문대비표

현 형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별지 제1호서식]

농지관리위원회후보자추천서

농지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추천서

입차인 대표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임대인 대표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자경농 대표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	.....		.....	
.....	.....			
자경과 임대를 겸한대표	.....		.....	
.....	.....			
.....	.....		.....	
.....	.....			

위 사람은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 구 ○ ○ ○ 동을 대표하는 농지관리위원 후  
보자로 추천합니다.

..... 농지법 제47조제2항제2호·동법시행령 제65조 및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  
 여 ..... 농지관리위원회위원 후보자.....

199    년    월    일

○ ○ 동 장 (인)

.....

입차인대표  
 첨부서류 : 후보자 임대인대표 인적사항 및 영농현황 1부  
 자경농대표

.....  
 ..... 임대와 자경을 겸한 대표 .....  
 .....

